

[별지] 「인권정책기본법」 안 주요내용

가. 국가인권정책위원회·집행위원회 설치(안 제 7 조)

- 1)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 설치
- 2)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30 인 이내의 위원,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
- 3)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인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, 발언하게 할 수 있음
- 4)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 구성·운영

나.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(안 제 8 조)

- 1) 시·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
- 2) 인권기구 설치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권기구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

다.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(안 제 9 조)

- 1)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

라.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(안 제 10 조)

- 1)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
- 2)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 수립·이행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

마.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(안 제 11 조 내지 제 15 조)

- 1)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
- 2)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 제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
- 3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, 시·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

바.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(안 제 16 조)

- 1)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
- 2)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
- 3) 추진실적 점검 결과와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

사.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(안 제 17 조)

- 1)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

아.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(안 제 18 조 및 제 19 조)

- 1)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,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 절차를 명시함
- 2)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후 이행계획을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

자.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(안 제 20 조)

- 1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
- 2) 위원회는 심의·조정을 통해 개인진정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

차.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(안 제 21 조 내지 제 23 조)

- 1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실천을 장려하여야 함
- 2)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여야 하고,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
- 3)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을 위한 지침, 정보공개 표준 등 마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

카.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,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(안 제 24 조 내지 제 27 조)

- 1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, 공직 유관단체 및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
- 2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인권교육 관련 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위한 연구·개발, 각종 인권교육 활동,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
- 3)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

타.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(안 제 28 조)

- 1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가능

파.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(안 제 29 조)

- 1) 매년 12 월 10 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 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
- 2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날과 인권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함